

의안번호	제 35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7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
----------	-----

발의연월일 : 2023년 7월 4일

발 의 자 : 김현문·이정범·박병천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 이유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상호 간의 정확한 ‘정보의 교환’과 ‘설득’은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음. 특히, 쟁점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교육 과정 속 ‘창의력 교육’의 필요성도 커졌음.

이에, 창의적 사고력 개발 등 교육적 효과 향상에 필수요소인 학교 독서교육을 기반으로 이와 연계한 읽기, 글쓰기, 말하기 등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독서교육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글쓰기 지도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에 대해 지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제명과 조문에 포함된 용어 일치(안 제5조, 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담 조직을”을 “전담부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행정적·재정적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재정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u>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u> <u><신 설></u></p>	<p>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 ----- 전담부서를 -----.</p> <p>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u>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8조(독서 행사) ①·②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독서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필요한</u> ----- -----.</p>
<p>제11조(<u>행정상·재정상의 조치</u>)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p>	<p>제11조(<u>행정적·재정적 조치</u>) -- ----- -----</p>

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
-----.

관계 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7호, 2022. 5. 3., 전부개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약칭: 학교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조례안에 따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